

남북한 형사사법공조에 대한 연구

A Study on Inter-Korean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남완우*
Nam, WAN-Woo

요약

남북은 분단 이후 70년을 각자의 정치체제를 구축하며 공존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은 처음으로 마주 앉았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연합이라는 통일의 방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행동으로 여전히 남북은 정치적 협력은 불가능할 수준이지만 비정치적 분야에서는 알게 모르게 협력을 하고 있다. 그 협력 가운데 비정치면서 서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환경범죄, 마약범죄와 같은 형사사법 분야다. 남북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과 같은 형태로는 형사사법공조가 불가하기에 남북이 형사사법 분야에서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고자 한다.

1. 서론

‘중전선언’이 이루어지면 곧이어 ‘평화협정’과 통일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남북은 비정치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비정치 분야 교류에서 형사사법에 대한 협력 및 교류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남과 북은 각자 주권국가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남북의 형사사법협력 문제는 발생하게 될 것이다. ‘중전선언’ 이후 본격적으로 남북이 교류하게 될 때 남북사이에 형사사법 협력이나 교류가 필요하게 될 때 어떤 기준에서 행동을 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형사사법협력 및 교류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상호주의

상호주의란 국제형사사법 협력의 기본원칙이라기 보다는 통상적인 국가 간의 조약 등 국제관계에 통용되는 일반원칙이다. 국제형사사법 협력에 있어 당사국 사이에 동등한 범위에서 협력에 응한다는 원칙우리나라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4조는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공조요청에 따른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규정하여 ‘상호주의’를 명확히 하고 있고,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서도 명시적으로 상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2.2. 쌍방가벌성

쌍방가벌성은 해당 범죄가 요청국과 피요청국의 형사법에 의하여 모두 가벌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제6조 제4호에서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를 공조 제한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3. 특정성

특정성이란 범죄인 인도제도에서 확립된 원칙으로서 청구국에 인도된 범죄인은 인도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 제10조에서 특정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 전주대학교 법학과 객원교수 namwanwoo@hanmail.net

2.4. 정치범 제한

범죄인 인도가 처음 시작된 때에는 정치범 인도가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19세기초 정치범죄를 이유로 소추된 자는 주로 왕정 하에서 자유주의적 정치활동 등을 하다가 도망자가 된 투사로 진보적 정치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들은 자기가 옹호하는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로 도망가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도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치범 불인도가 범죄인인도법의 원칙이 된 것이다.

3. 결론

이 관점에서 본다면 남북이 형사사법 협력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형사사법공조조약, 범죄인인도조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더불어 남북은 형사사법협력을 실시할 때 각자가 개별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서로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일반적인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상호주의, 쌍방가별성, 특정성, 정치범 제한, 일사부재리, 자국민 불인도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남북관계가 급진전되어 남북연합이 만들어져도 남북은 연합을 구성하는 구성국이라는 하나 각자 주권을 보유하는 개별국가이기에 통합형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굳이 통합형법을 제정하더라도 남북간에 양자조약을 통해 적용해야 한다. 더불어 처벌을 위한 통합형법 제정을 희망한다면 그것은 일반범 죄보다는 남북 공통으로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마약, 성매매, 환경 같은 비정치적 범죄에 대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원백. (2006), 「영국의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에 관한 연구」, 법무연수원
박천혁. (2011),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 연구,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이효원. (2008). 남북관계발전과 북한과의 사법공조방안, 「저스티스」